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1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1월 02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민병주, 박성연, 박춘선, 박칠성,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봉준, 이상욱, 이은림, 이종태, 이효원, 최민규, 최유희, 한·신, 홍국표, 황유정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최근 담배 및 술 외에 신종 마약류 등 유해약물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해약물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
4.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실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실적조사)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가로 교육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업자 등에 대해 유해약물 용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